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1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공고

1.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

□ 채용예정인원: 총 52명

본원 및 서울·경기본부		그 외 지역 본부	
근무지	인원(명)	근무지	인원(명)
본원(원주)	42	부산본부(부산)	2
본원(서울 국제전자센터)		광주전남본부(광주)	1
서울본부(서울)		대전충청본부(대전)	1
경기남부본부(수원)		울산경남본부(창원)	1
경기북부본부(의정부)		전북본부(전주)	2
		인천본부(인천)	1
		강원본부(강릉)	1
		제주본부(제주)	1

※ 수행업무 등은 [별첨1] 직무기술서 참고

□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1.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이 경우 종전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 단체를 포함

□ 공통 자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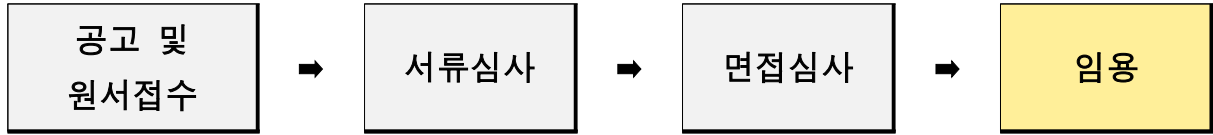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등

- 임기: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형태: 겸임(주2 ~ 4일) 또는 전임(주5일) 근무(주당 최소 16시간 이상)
- 근무지: 본원 및 해당 본부
 - * 입사지원 시 희망근무지역 및 희망근무일수 기재(향후 인사 배치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
 - ** 임용 이후 인력운영상 필요 등에 따라 근무지역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 우리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따름

3.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전형절차



□ 채용일정

○ 채용일정

구 분	전형 일정		비 고
	인천·강원·제주본부	본원 및 그 외 지역 본부	
공고 및 원서접수	· 11. 25.(월) ~ 12. 9.(월) 18시		· 채용 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심사	· 12. 10.(화) ~ 12. 12.(목)		-
서류심사 결과발표	· 12. 13.(금)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면접심사	· 12. 18.(수) ~ 12. 20.(금)		· 서울 국제전자센터 등
증빙서류 등록	· 12. 18.(수) ~ 12. 20.(금) 18시		· 채용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발표	· 12. 30.(월) 17시 이후		· 채용 홈페이지 발표
임용서류 등록	· 2024. 12. 30.(월) ~ 2025. 1. 6.(월) 18시		· 채용 홈페이지
임용(증빙) 서류 검토	· 2024. 12. 30.(월) ~ 2025. 1. 10.(금)	· 2024. 12. 30.(월) ~ 2025. 2. 28.(금)	-
임 용	· 2025. 1월 이후	· 2025. 3월 이후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임용 예정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4. 공고 및 원서접수

- 기간: 11. 25.(월) ~ 12. 9.(월) 18:00
- 공고방법: 인터넷 공고(우리원 홈페이지, 나라일터, 공공기관 알리오 등)
- 원서접수: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 ▶ 우리원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 기재란이 없으며,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근심사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 전문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학력, 전공학과 및 연구경력 정보를 수집하여, 입사 이후 직무 배치에 참고함
- ▶ 편견요소(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5. 서류심사

- 대상: 입사지원서 접수자
- 심사기준: 자격기준 적격여부 확인
- 합격자 선발: 적격자 전원 선발

6. 면접심사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신분증* 필참)
 -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가능),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 일자: 12. 18.(수) ~ 12. 20.(금)
- 장소: 서울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효령로 304) 회의실 등

- **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심층면접, 인성면접 통합)을 통해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자 선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 합격 배수 내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

7. 증빙서류 제출

- **대상:** 면접심사 응시자 * 증빙서류 목록 [붙임3] 참조
- **기간:** 12. 18.(수) ~ 12. 20.(금) 18:00
- **방법:** 증빙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발급 유효기간)에 맞게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하며, 블라인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하여 제출
 - ※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하되, 응시자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는 최종 학력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증빙서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우리원 채용 관련 제도 안내

- 장애인 편의제공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제공 가능
 -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사전신청 하여야 함
 - ※ [별첨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 참조
 - 이후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
 - 채용홈페이지 Q&A 게시판에 ① 수험번호, ② 성명, ③ 서류명, ④ 반환받을 주소를 기재하여 등록
 -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우리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환 요청 기한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
- 채용 비위 및 부정행위 이의신청
 -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 12. 30.(월) ~ 2025. 1. 13.(월)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hira.recruitlab.co.kr>) - 채용문의 - Q&A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와 관련한 사항
- ▶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 전형별 평가기준, 개인별 취득점수(순위)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우리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 등 반드시 확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생략)

9. 기타 사항

- (중복지원 금지) 입사지원은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 시 제출한 입사지원서 모두 무효처리
- (오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각종 경력조회 등 임용(증빙)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증빙) 서류 허위·착오기재, 임용 결격사유,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조회 등 임용(증빙)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관련 안내사항 숙지) 본 채용과 관련한 모든 안내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연락처, E-mail 주소 오기재 및 특정 전화번호의 수신 차단, 스팸 설정 등으로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
- (채용청탁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
- (영리업무 등 겸직금지)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우리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상근심사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임용일 전까지 원 소속기관(소속대학 총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 활동을 허가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주 5일(전임) 근무 예정인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
- (공지·문의) 채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FAQ 및 Q&A 게시판 이용
 - 채용 일정 등 변동 시 우리원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 안내 예정
 - 유선문의: ☎ 070-4896-0803(평일 9:00 ~ 18:00)
 - ※ 수신차단, 스팸설정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2024. 11.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붙임1 **임용 결격사유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2	우대사항
------------	-------------

분 야	항 목	자 격 기 준	가 산 점
사회 형평적 채용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취업지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예외적으로 채용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 상 가점 5% 또는 10%) 	면접전형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5% 또는 10%를 부여하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면접전형 만점의 5~10% (경증5%, 중증10%)

※ 우대 대상자는 입사지원서접수 마감일('24. 12. 9.) 기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우대 적용

붙임3 증빙서류 목록

* 발급유효기간, 제출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서류제출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대상	발급 유효기간
자격 (면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면허증 사본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 기타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자 (해당 자격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기한없음
경력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근무기간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필수 	경력사항 입력자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기간이 증빙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증명서 - 기한 없음 재직증명서 - 12. 9.(월) ~ 12. 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①, ②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¹⁾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²⁾ ② 소득금액증명³⁾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발급처] 1) 근로복지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국세청</p> </div>		12. 9.(월) ~ 12. 20.(금)
사회 형평적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대군인 확인서 등 	취업지원 대상 해당자	12. 9.(월) ~ 12. 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 	장애인 해당자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개명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 필수 제출 여성: 개명자 또는 군 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12. 9.(월) ~ 12. 20.(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자에 한함	기한없음